

[별표 1의2] <개정 2010.3.19>

전염병의 진단기준(제1조의6제1항 관련)

1. 제1군전염병의 경우

가. 제1군전염병환자 :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, 혈액, 구토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

나. 의사환자 :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

다. 병원체보유자 :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

2. 제2군전염병의 경우

가. 제2군전염병환자 :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, 혈액, 뇌척수액, 타액,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, 항체검출검사, 항원검출검사,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. 다만, 파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환자로 진단한다.

나. 의사환자 :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

다. 병원체보유자 :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

3. 제3군전염병의 경우

가. 제3군전염병환자 :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, 객담, 혈액, 뇌척수액, 흉수, 복수, 병변조직,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, 암시야(暗視野)현미경검사, 항원검출검사, 항체검출검사, 유전자검출검사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

나. 의사환자 :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

다. 병원체보유자 :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

4. 제4군전염병

가. 제4군전염병환자 :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, 혈액, 뇌척수액, 병변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, 항원검출검사, 항체검출검사,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

나. 의사환자 :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감염증임이 의심되나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

5. 지정전염병

지정전염병환자 : 해당전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, 골수, 뇌척수액, 객담, 농, 병변조직, 림프절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, 항체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전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

6. 제1호 내지 제5호의 진단기준 외에 전염병 진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.